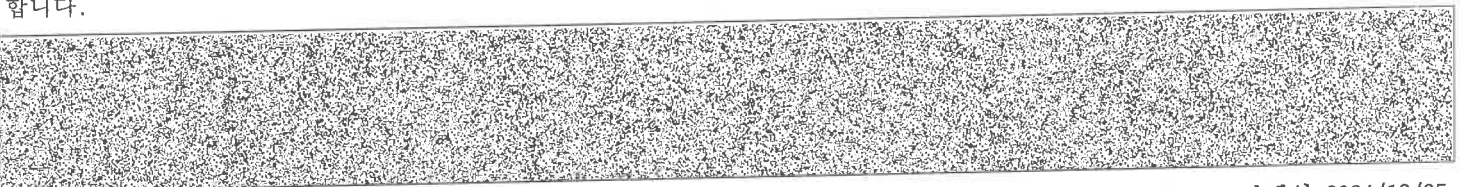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11280	
등록번호	180111-0288654	
상 호	바다중공업 주식회사	2008.08.07 변경 2008.08.13 등기
	에이치엘비오션테크 주식회사 (HLB OCEAN TECH CO., LTD.)	2024.11.28 변경 2024.12.04 등기
본 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00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35-56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16 등기
공고방법	부산사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부산일보에 게재한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adahi.co.kr)에 한다. 다만 전 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에 게재한 다.	2024.03.12 변경 2024.03.14 등기
1주의 금액	₩ 5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 주	
보통주식	6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900,000 주	2009.05.29 변경
보통주식	900,000 주	2009.05.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400,000 주	2010.03.26 변경
보통주식	1,400,000 주	2010.03.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500,000 주	2011.11.01 변경
보통주식	1,500,000 주	2011.11.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700,000 주	2012.12.25 변경
보통주식	1,700,000 주	2012.12.2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700,000 주	2015.06.25 변경
보통주식	2,700,000 주	2015.06.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03,039 주	2023.12.01 변경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 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발행번호 1140202022611050022110422000281201L1F0N101G5A5R9D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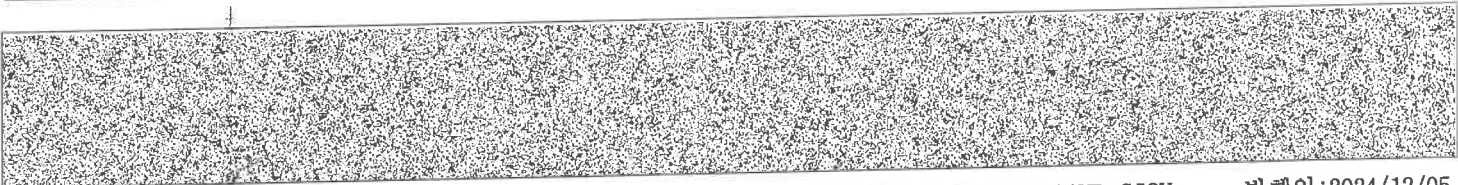
발급확인번호 2804-AAYD-GJOY

발행일: 2024/12/05

등기번호	011280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보통주식	603,039 주
발행주식의 총수	4,124,166 주
보통주식	4,124,166 주
자본금의 액	
	금 301,519,500 원
	금 2,062,083,000 원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2023.12.01 등기	
2023.12.23 변경	
2023.12.26 등기	

목 적			
1.해양 및 육상 대형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2.선박용 각종 블록, 의장, 배관등 일체품 제작 설치업			
3.기계장치 철구조물 공기구의 제작설치 및 수리			
4.강선건조			
5.산업기계 및 병기부속 제조업			
6.실내장식 및 집기비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7.부동산 임대업			
8.수출입업			
9.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009.11.23	삭제	2009.11.26 등기>
9.구명정동 해상 안전 장비 제조 및 판매업	<2009.11.23	추가	2009.11.26 등기>
	<2015.11.23	삭제	2015.11.24 등기>
10.선박용 수처리 설비 제조 및 판매업	<2009.11.23	추가	2009.11.26 등기>
	<2015.11.23	삭제	2015.11.24 등기>
11.해상 장비의 안전 검사 및 교육	<2009.11.23	추가	2009.11.26 등기>
	<2015.11.23	삭제	2015.11.24 등기>
12.기타 선박 부품 판매 및 유통업	<2009.11.23	추가	2009.11.26 등기>
	<2015.11.23	삭제	2015.11.24 등기>
13.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09.11.23	추가	2009.11.26 등기>
	<2015.11.23	삭제	2015.11.24 등기>
9.해양 및 육상 플랜트 용 기계장치 및 기구의 제작 및 설치업	<2015.11.23	추가	2015.11.24 등기>
10.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015.11.23	추가	2015.11.24 등기>
	<2024.11.28	삭제	2024.12.04 등기>
11.위 각호의 사업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2015.11.23	추가	2015.11.24 등기>
	<2024.11.28	삭제	2024.12.04 등기>
10.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024.11.28	추가	2024.12.04 등기>
11.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024.11.28	추가	2024.12.04 등기>
12. 위 각호의 사업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	<2024.11.28	추가	2024.12.04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남상우 571009-*****			
2008 년 08 월 07 일 취임	2008 년 08 월 13 일	등기	
2011 년 03 월 29 일 사임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이사 진양곤 660114-*****			
2008 년 08 월 07 일 취임	2008 년 08 월 13 일	등기	
2011 년 03 월 29 일 사임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이사 이현수 71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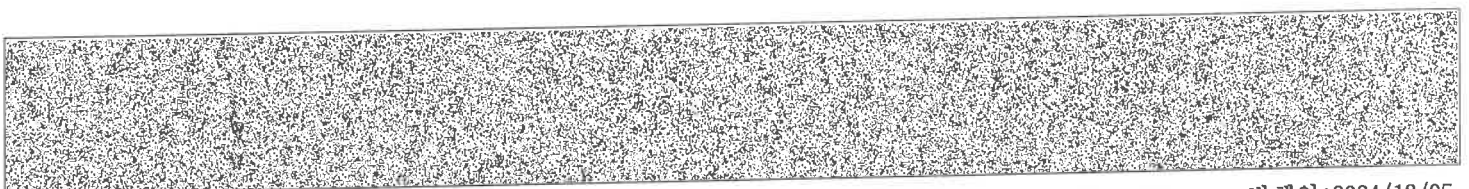


등기번호	011280								
2008 년 08 월 07 일	취입	2008 년 08 월 13 일	등기						
2010 년 08 월 23 일	사입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감사 김용웅 580601-*****									
2008 년 08 월 07 일	취입	2008 년 08 월 13 일	등기						
2011 년 03 월 29 일	중입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2014 년 03 월 29 일	중입	2014 년 03 월 31 일	등기						
2017 년 03 월 29 일	중입	2017 년 03 월 31 일	등기						
2020 년 03 월 27 일	중입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2023 년 03 월 30 일	중입	2023 년 04 월 07 일	등기						
대표이사 남상우 57100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산사카자아파트 221-1406									
2008 년 08 월 07 일	취입	2008 년 08 월 13 일	등기						
2009 년 02 월 04 일	사입	2009 년 02 월 04 일	등기						
대표이사 이현수 7108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0 장미마을 130-1402									
2009 년 02 월 04 일	취입	2009 년 02 월 04 일	등기						
2010 년 08 월 23 일	사입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사내이사 문경환 720614-*****									
2010 년 08 월 23 일	취입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2013 년 01 월 18 일	사입	2013 년 01 월 22 일	등기						
대표이사 문경환 7206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7-10 에이동									
2010 년 08 월 23 일	취입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2013 년 01 월 18 일	사입	2013 년 01 월 22 일	등기						
사내이사 권양곤 660114-*****									
2011 년 03 월 29 일	취입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2014 년 03 월 29 일	중입	2014 년 03 월 31 일	등기						
2017 년 03 월 29 일	중입	2017 년 03 월 31 일	등기						
2020 년 03 월 29 일	중입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2023 년 03 월 30 일	중입	2023 년 04 월 07 일	등기						
2024 년 03 월 11 일	사입	2024 년 03 월 14 일	등기						
사내이사 이현수 710801-*****									
2011 년 03 월 29 일	취입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2014 년 03 월 29 일	중입	2014 년 03 월 31 일	등기						
2015 년 11 월 23 일	사입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사내이사 김양준 521001-*****									
2013 년 01 월 18 일	취입	2013 년 01 월 22 일	등기						
2014 년 10 월 14 일	사입	2014 년 10 월 16 일	등기						
대표이사 김양준 521001-*****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401번길 12, 112동 1702호(삼산동, 세양청구마을)									
2013 년 01 월 18 일	취입	2013 년 01 월 22 일	등기						
2014 년 09 월 30 일	사입	2014 년 10 월 01 일	등기						
대표이사 권양곤 6601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0, 102동 801호(정자동, 동양정자파라곤)									
2014 년 09 월 30 일	취입	2014 년 10 월 01 일	등기						

등기번호	011280
2015 년 11 월 23 일 사임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사내이사 최영삼 610602-*****	
2014 년 10 월 14 일 취임	2014 년 10 월 16 일 등기
2017 년 03 월 29 일 사임	2017 년 03 월 31 일 등기
사내이사 이을규 650109-*****	
2015 년 11 월 23 일 취임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2017 년 02 월 28 일 사임	2017 년 03 월 06 일 등기
대표이사 이을규 650109-*****	경기도 파주시 파래로 422, 108동 2601호(야당동, 한빛마을1단지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2015 년 11 월 23 일 취임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2017 년 02 월 28 일 사임	2017 년 03 월 06 일 등기
사내이사 권양호 630127-*****	
2017 년 02 월 28 일 취임	2017 년 03 월 06 일 등기
2020 년 03 월 27 일 중임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2023 년 03 월 30 일 중임	2023 년 04 월 07 일 등기
2024 년 03 월 11 일 사임	2024 년 03 월 14 일 등기
대표이사 권양호 63012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904호(신봉동, 신봉마을 자이2차아파트)
2017 년 02 월 28 일 취임	2017 년 03 월 06 일 등기
2020 년 03 월 27 일 중임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2023 년 03 월 30 일 중임	2023 년 04 월 07 일 등기
2024 년 03 월 11 일 사임	2024 년 03 월 14 일 등기
사내이사 최영삼 610602-*****	
2017 년 03 월 29 일 취임	2017 년 03 월 31 일 등기
2020 년 03 월 29 일 중임	2020 년 04 월 06 일 등기
2023 년 03 월 30 일 임기만료	2023 년 04 월 07 일 등기
사내이사 도순기 690430-*****	
2023 년 03 월 30 일 취임	2023 년 04 월 07 일 등기
사내이사 손우영 660320-*****	
2023 년 03 월 30 일 취임	2023 년 04 월 07 일 등기
2024 년 03 월 11 일 사임	2024 년 03 월 14 일 등기
사내이사 김기원 690202-*****	
2024 년 03 월 11 일 취임	2024 년 03 월 14 일 등기
대표이사 김기원 690202-*****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15, 108동 1003호(주례동, 주례 한일유엔아이아파트)
2024 년 03 월 11 일 취임	2024 년 03 월 14 일 등기
사내이사 이현주 710801-*****	
2024 년 03 월 11 일 취임	2024 년 03 월 14 일 등기

지점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35-44(바다중공업(주) 제2공장)
2023 년 05 월 02 일 설치 2023 년 05 월 12 일 등기



등기번호

011280

전 환 사 채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10 년 08 월 18 일 발행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
< 2011 년 02 월 11 일 전부상환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구역원정 (금900,000,000원)

< 2010 년 08 월 18 일 발행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
< 2011 년 02 월 11 일 전부상환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구역원권 1매

< 2010 년 08 월 18 일 발행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
< 2011 년 02 월 11 일 전부상환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프로

< 2010 년 08 월 18 일 발행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
< 2011 년 02 월 11 일 전부상환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비율: 전환사채 권면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 주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전환가액: 액면금액 오백원(₩500)당 금 일천오백원(₩1,500)으로 한다.

3) 전환가격의 조정:

가. 전환청구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text{기발행주식수} + T^*$$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격 X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 \text{주당 발행가격} / \text{시가})$$

* 주1)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주2) 신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로 발행될 주식의 총수

* 주3) 1주당 발행가액: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 이며 전환사채, 산주인수권수 사채인 경우에는 당해 전환(행사)가액

* 주4) 시가: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조정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 2010 년 08 월 18 일 발행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
< 2011 년 02 월 11 일 전부상환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

등기번호	011280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10 년 08 월 18 일 발행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 < 2011 년 02 월 11 일 전부상환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2010년 08월 20 일부터 2011년 7월 17일 까지로 한다. < 2010 년 08 월 18 일 발행 2010 년 08 월 24 일 등기 > < 2011 년 02 월 11 일 전부상환 2011 년 03 월 31 일 등기 >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제 1 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1 년 09 월 30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500,000,000원 < 2011 년 09 월 30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 일억원권 5매 < 2011 년 09 월 30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프로 < 2011 년 09 월 30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500,000,000원 금300,000,000원 < 2009 년 11 월 23 일 변경 2009 년 11 월 26 일 등기 > 금 0원 < 2010 년 03 월 18 일 전부상환 기간미도래 2010 년 04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09 월 30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1)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인수권 행사비용 :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액(2이상의 신주인 수권증권으로 행사 청구 하는 때에는 그 권면 합계금액)의 100%를 행사 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단, 신주인수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 구할 수 없다. 3)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 주당 1,000원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3년 5)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 본 사채는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 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 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6)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 방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의 해당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은 지정 금융 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해야 한다. 단	
---	--



등기번호

01128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발행가격의 납입을 요청할 때에는 대용납입이 가능하다.~~

7)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 방법 :~~

~~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액면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①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i)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 또는 (ii) 최근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격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교(원단위 미만은 절사),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당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제①호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③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④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 : (i)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마다 (ii)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분기말 사채발행일 해당일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평균종가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2011 년 09 월 30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3년

~~< 2011 년 09 월 30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제 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9 년 05 월 28 일 발행 2009 년 05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11 월 01 일 전부행사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일역원장

등기번호	011280
------	--------

< 2009 년 05 월 28 일 발행 2009 년 05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11 월 01 일 전부행사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일액원정 1매~~

< 2009 년 05 월 28 일 발행 2009 년 05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11 월 01 일 전부행사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프로~~

< 2009 년 05 월 28 일 발행 2009 년 05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11 월 01 일 전부행사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일액원정~~

< 2009 년 05 월 28 일 발행 2009 년 05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11 월 01 일 전부행사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1) 행사비용: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액(2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행사청구하는 때에는 그 권면 합계금액)의 100%를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단, 신주인수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할수 없다

(2) 행사가격: 1,000원

(3) 행사로 인수할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4) 행사로 인수할 발행할 주식의 수: 사채권면 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 단수주는 절사함

(5)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3년

(6) 행사가격의 조정

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를 하기전에 액면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①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전에 (i)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의 가치를 희석 시키는 경우, 또는 (ii) 최근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행사가격 적용일 직전 일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에 전환(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발행)될 주식의 수로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사채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당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제①호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③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등기번호

011280

④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 (i)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는 매월 사채발행 해당일마다 (ii)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분기말 사채발행일 해당일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평균증가+1주일 가중평균증가+최근일 증가)/3)과 최근일 증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7)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여 발행후 1년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8)사채의 상환방법과 기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2012년 5월 28일에 원금의 12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본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일의 3일전까지 바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상환대금은 본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과 위 금액에 당해기간동안의 제10호에 정한 이율을 곱하여 신출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9)사채발행방법: 사채의 원금 일억원정(금100,000,000)은 일시에 발행한다

(10)행사절차: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바다중공업주식회사 경영자원팀에 제출하여 청구하고, 주금납입은행에 신주의 발행가액전액을 납입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대용납입 할수 있다

1.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수 있는것에 관한 사항: 신주인권을 사채와 분리가능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본다

< 2009 년 05 월 28 일 발행 2009 년 05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11 월 01 일 전부행사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3년

< 2009 년 05 월 28 일 발행 2009 년 05 월 29 일 등기 >
< 2011 년 11 월 01 일 전부행사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제3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2011 년 04 월 20 일 발행 2011 년 04 월 27 일 등기 >
< 2014 년 03 월 21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 육억원 (600,000,000원)

< 2011 년 04 월 20 일 발행 2011 년 04 월 27 일 등기 >
< 2014 년 03 월 21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등기번호	011280
------	--------

금일역원권 6매

< 2011 년 04 월 20 일 발행 2011 년 04 월 27 일 등기 >
 < 2014 년 03 월 21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발행 액면금액의 100프로

< 2011 년 04 월 20 일 발행 2011 년 04 월 27 일 등기 >
 < 2014 년 03 월 21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 육억원 (600,000,000원)

< 2011 년 04 월 20 일 발행 2011 년 04 월 27 일 등기 >

금 사억원 (400,000,000원)

< 2011 년 11 월 01 일 일부상환 2011 년 11 월 14 일 등기 >

금0원

< 2012 년 02 월 28 일 전부상환 기간미도래 2012 년 03 월 08 일 등기 >
 < 2014 년 03 월 21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1)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바다중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2)행사조건

가. 행사비용: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행사가격: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오백원(W500)당 금 일천오백원(W1,500)으로 한다.

3)행사가격의 조정

가. 행사청구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text{기발행주식수} + T^*$$

$$\text{조정후 행사가격} = \text{조정전 행사 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text{기발행주식수} + T^*}$$

수

$$T^*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text{주당 발행가격} / \text{시가})$$

* 주1)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주2) 신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로 발행될 주식의 총수

* 주3) 1주당 발행가액: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 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수 사채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가격

* 주4) 시가: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며,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조정후 행사가격의 호가 단위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 2011 년 04 월 20 일 발행 2011 년 04 월 27 일 등기 >

등기번호	011280
< 2014 년 03 월 21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2011년 4 월 20 일부터 2014년 3 월 20 일 까지로 한다. < 2011 년 04 월 20 일 발행 2011 년 04 월 27 일 등기 > < 2014 년 03 월 21 일 기간만료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당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5 년 11 월 23 일 변경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회사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범위 내의 보통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5 년 11 월 23 일 변경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자가 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2015 년 11 월 23 일 변경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등기번호	011280
------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 기간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2015 년 11 월 23 일 변경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등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5 년 11 월 23 일 변경 2015 년 11 월 24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1999 년 05 월 28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08년 11월 17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66-4(으)로부터 본점이전

2008 년 11 월 18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4년 12월 05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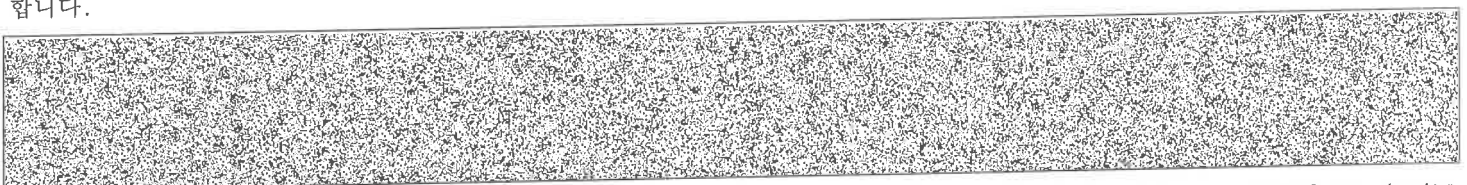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40202022611050022110422000281201L1F0N101G5A5R9D1 2

발급확인번호 2804-AAVD-GJOY

발행일: 2024/12/05